

유엔 持續開發委員會 第3次會議 參加結果

지난 5월 24일 환경부는 올림픽 파크텔에서 “『의제 21』이행을 위한 민간단체(MGO)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여기서 유엔 지속개발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에 결과 보고내용을 소개한다.

I. 地球環境問題에 대한 國際的 對應

지난 '72. 6월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 人間環境會議는 환경에 관한 최초의 대규모 국제회의로서 지구환경문제가 國際的인 關心事로 부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회의에서 “인간은 환경의 창조자이기도 하며 또한 피조물이기도 하다”로 시작되는 7개의宣言文과 26개의 원칙으로 구성된 「人間環境宣言(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 일명 ‘스톡홀름 선언)」을 채택하고 이 회의를 계기로 '73년 UN은 지구환경문제를 논의할 핵심 UN기구로서 유엔環境計劃(UNEP)을 설치하였다.

또한 '83년에는 UN총회결의에 따라 2000년대를 향한 長期 地球環境保全 戰略을 수립할 임무가 주어진 「世界環境開發委員會」(WCED)를 설치하고 Brundtland(당시 노르웨이의 여수상)가 위원장이 된 동위원회는 '87년에 「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일명 ‘브룬트

란트보고서')를 발간 하여 “持續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의 실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한편 '92.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UN 環境開發會議(UNCED)는 114개국의 국가정상을 포함한 178개국의 정부대표 8천여명이 참가하여 향후 地球環境問題의 基本原則인 “리우宣言”과 21세기를 향한 지구환경보전 실천강령인 「議題 21(Agenda 21)」을 채택하였다.

「리우선언」은 “持續可能한 開發”을 실현하기 위한 地球環境秩序의 基本規範으로서 全文과 27개 원칙으로 구성되었으며 「議題 21(Agenda 21)」은 리우선언의 具體的인 實踐計劃으로서 총 40장으로 구성되어 地球環境問題의 원인이 되는 각종 社會·經濟的 요인에 대한 대책과 대기·해양·폐기물·토양 등 部門別 環境問題에 대한 대책, 재정·기술이전 및 「의제 21」이행을 위한 제도, 체제등 「의제 21」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국 정부의 정책 수립·추진과정에 대한 主要團體(Major Group)의 참여 및 정보접근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제23장부터 제32장까지 여성, 청소년, 민간단체, 지방정부 등 主要團體의 역할 증진방안을 규정하고, 「의제 21」履行狀況의 평가과정에 主要團體가 참여토록 권고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참여와 협조가 「議題 21」목표달성을 핵심요인임을 지적하고, '96년까지 「地方議題 21」을 수립토록 권고하였으며 소비패턴 전환을 위한 교육, 홍보등 소비자의 인식전환에 관한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의제 21」의 채택으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 대응 방향은 설정되었으나 최대 쟁점사항인 財源問題에 대한 혁신적 방안 마련은 미흡하였다.

II. 유엔 持續開發委員會(CSD) 제3차회의 주요논의

1. 持續開發委員會(CSD) 개요

'92년 6월 UN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議題 21」의 이행 사항을 점검·평가할 持續開發委員會(CSD :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설치를

UN 총회에 권고하고 '92. 12월 제47차 UN 총회에서 經濟社會理事會(ECOSOC) 산하에 CSD 설치를 결의(총회결의 47/191)하였다.

'93년 2월에는 經濟社會理事會 조직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을 CSD 이사국으로 선임하면서 「議題 21」의 이행상황 평가 및 감시를 하고 특히 선진국의 재정지원 및 환경기술이전분야의 이행상황 중점 검토하는 한편 「議題 21」의 이행에 관한 각종 보고서 및 자료검토를 통해 각국 정부,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의 보고서를 심의하고 각종 國際環境協約의 체결 및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로 하고 「議題 21」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키로 하였다.

2 제3차 CSD會議

우리나라를 포함한 CSD 이사국(53개국)과 기타 옵저버국가, 국제기구 및 NGO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3차 CSD회의가 지난 4월에 열려 의제별 결정문 및 제4차 회의(96) 잠정의제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외무부, 환경부, 산림청에서 14명이 참가(정부대표 11명, 민간전문가 3명)하였다.

회의진행은 實務會議와 장관급高位會議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實務會議에는 UN 사무총장 보고서와 각국 대표의 토론내용을 토대로 決定文(Decision)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3개의 基礎委員會(Drafting Group)를 설치, 운영(4. 20~4. 26)하였다.

Drafting Group A에서는 무역과 환경, 빈곤퇴치, 소비패턴 전환, 인

구, 재원 및 재정체계를 Drafting Group B에서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 주요그룹, 기술이전, 과학,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의제 21」 이행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Drafting Group C에서는 공통의제 종합, 토지관리, 산림황폐화방지, 한밭퇴치, 산지개발, 농촌개발, 생물다양성 보전, 생명공학, 제2차회의 결정사항의 이행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등의 식으로 진행되었다.

민간단체 등 主要團體의 대표는 소속단체의 대표자격으로 CSD의 모든 공식일정에 참여하였으며 Third World Network(생명공학, 목재인증제도), Earth Summit Watch(유연회발유 사용중지), World Wide Fund for Nature(지속가능한 개발관련 지표)등 다수의 민간단체가 회의기간중 독자적인 이벤트 행사(Side Events)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든 民間團體는 CSD 사무국에 대한 통보만으로 참가가능(우리나라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에서 참가)하였다.

3. 主要 論議 및 決定事項

각국 대표는 CSD 활동에의 主要團體 참여를 확대하고, 그들의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議題 21」 이행을 위한 國家別調整體系(national coordination mechanism)에 主要團體가 선출한 그들의 대표를 포함시킬 것 등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이에 주요단체와 정부간의 동반자관계, 정보교환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CSD 국가

대표단 구성에 主要團體의 대표 참여를 권장하기로 하였다.

또 '95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제4차 世界女性會議와 관련,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여성의 중심적 역할과 지방정부의 「地方議題 21」 수립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地方議題 21」에 관한 이벤트행사(Day of Local Authorities, '95. 4. 18)로 영국, 일본, 캐나다, 페루, 탄자니아 등 5개국의 사례발표와 토론순으로 진행되어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중앙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지원 및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협력을 피력하였다.

다음은 생산 및 소비패턴의 전환에 대한 사항으로 일부 開途國들은 선진국의 과소비 등 현행 소비 및 생산 패턴이 지구환경문제악화의 주요인임을 지적하면서 소비패턴 전환문제는 선진국만의 과제로 규정할 것을 주장하고 先進國은 소비 및 생산 패턴의 전환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의 의무가 되어야 할 것을 밝혔다.

決定文에는 선진·개도국의 차별적인 共通義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CSD의 작업계획을 채택하여 生產 및 消費 패턴 추세에 따른 자원소비가 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선진국의 소비패턴의 변화가 開途國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소비패턴 변화를 위한 각종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각국 정부는 생산 및 소비패턴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소비패턴 정착을 위한 民間團體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제품의 環

境親和性에 관한 정보제공과 소비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소비패턴 전환관련 정책 및 이행상황에 관한 평가등을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95. 9 "消費패턴轉換에 관한 政策手段 暫時" 개최 계획이 결정문에 반영되었다.

環境技術移轉에 관해서는 UNCED 이후 주요 쟁점사항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기술이전의 방법 및 주체에 대한 先進·開途國간의 의견 대립이 있었다.

開途國은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세제혜택 등 특히 先進國政府의 역할을 주장한 반면, 先進國은 환경비용의 내부화 촉진을 통한 기술수요창조와 기술이전에 있어서의 民間企業의 역할을 강조하고 일부 先進國(미국등)은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이라는 용어대신에 기술협력(technology cooper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商業的 次元의 기술이전에 대해 강조함과 동시에 開途國은 기술이전의 대상이 공공소유기술뿐만 아니라 民間所有技術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정문은 民間部門이 기술이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되, 政府는 기술이전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환경기술정보 전파, 관련 제도 발전 및 능력형성, 파트너쉽 형성등 3개 우선분야에 관한 作業計劃을 채택하므로서 '94. 11. 서울개최 워샵에서 제안된 기술정보교환을 위한 協議體(consultative mechanism) 구성과 환경기술평가 및 적용을 위한 環境技術센터(ESTCs)의 운영이 주요 정책과제로 반영되었다.

기술이전의 중점대상이 汚染處理技術 위주에서 事前豫防的 技術로 전환되어야 함은 물론 기술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서 南·北協力과 더불어 南·南協力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기술분야의 NGO가 CSD에서 제시한 3개 우선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인 履行計劃 수립·추진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환경과 무역의 연계에 대한 사항으로 開途國에 대한 재정 및 기술이전, 능력형성, 지원등 積極的인 措置(positive measures)가 무역규제조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開途國의 의견과, 무역규제조치가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先進國들의 의견 대립이 있었다.

결정문에서는 환경과 무역이 相互補完의(mutually supportive)이어야 하며, 환경과 무역의 연계조치에는 개도국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고 수입국 관할 지역밖의 환경문제에 대한 일방적 무역규제조치는 지양하여야 하며, 개별 국가별 一方的 措置보다는 가능한 한 開途國合意에 기초하여야 함과 제품의 全週期(life-cycle) 평가, 환경마크제도, 포장기준 등 개도국의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정책·제도의 무역제한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은 물론 UNCTAD와 UNEP이 국제환경협약상 貿易規制措置의 환경보전 효과와 환경관련 무역정책의 투명성 및 국제협력 증진방안을 강구토록 요청하였다.

한편 이번회의에서는 지구상의 山林面積(총 34억ha)이 지난 10년

동안 매년 약 1,500만ha씩 줄어들고 있어 2000년대초에는 대부분의 热帶林이 훼손될 것으로 예상, 최근 산림보전을 위함 구속력있는 法的·制度的 裝置 마련의 필요성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機構의 설치에 대하여 목재대량 생산·소비국, 기타국가와 NGO간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을 인식하고 지구적 차원의 山林保全을 위한 政府間 패널(UNCSD Open-Ended Intergovernmental Panel on Forests) 설치에 대해 先進·開途國간 합의를 성립시켰다.

다만 동 패널의 작업범위와 관련, 미국, 캐나다, EU 등 先進國은 '92. 6 UNCED에서 채택된 "山林原則聲明"등 기존의 제도적 장치를 새로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등으로 발전시킬 것을 명문화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브라질 등 開途國은 이에 반대하므로서 동 패널로 하여금 法的裝置(legal mechanism)를 포함한 多者間制度(institution), 임산물 관련 환경과 무역의 연계,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에 있어서의 국제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 하기로 결정하였다.

패널의 作業內容에 대하여 제4차 CSD회의('96)에 중간보고서를, 제5차 CSD회의('97)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제 1차 회의를 '95년중 빠른 시기안에 개최하여 조직구성 및 기능배분 문제를 결정하였다.

또한 이 패널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主要團體들이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재원 및 재정체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UNCED에서 각국이 公的開發援助(ODA) 증액(GNP의 0.7%)에 합의하였으나, '93년에는 '92

년에 비해 절대액에 있어서도 오히려 감소되었다.

대다수 開途國들은 선진국들의 ODA 증액 필요성과 개도국의 외채문제 해결책 강구등 UNCED에서 합의한 先進國들의 義務履行이 우선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미국, 프랑스(EU대표), 일본등 先進國들은 기준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성과 선진국 민간자본의 개도국 유치를 위한 제도정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므로서 UNCED의 결정에 따라 先進國이 공적개발원조(ODA)를 증액할 것을 촉구하고, ODA 사용의 효율성 증진과 ODA 증액 목표(GNP 0.7%) 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 발굴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문에서는 開途國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선진국 민간자본의 직접투자와 개도국의 부채해결등 선진국의 對開途國 支援을 강조하였다.

4. 우리 代表團의 주요 活動事項
'94년 11월 서울개최 “環境技術移轉에 관한 國際워샵” 결과를 CSD 결정에 반영하므로서 기술이전을 위한 세계적 實踐方案 마련에 기여하여 워샵 최종보고서를 UN의 公式文書로 채택시켰으며, CSD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워샵개요를 설명하였다.

또한 '95년 9월 “消費 패턴 轉換에 관한 國際워샵” 개최를 제의하였다.

대부분의 CSD 참가자들은 최근 선진, 개도국의 공동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소비패턴 전환에 관하여 先開發開途國인 우리나라가 워샵을 개최하는데에 큰 의미를 부

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쓰레기 從量制度의 개요 및 효과 설명하였는데 각국 대표들은 生產 및 消費 패턴의 轉換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등 제도에 큰 관심표명을 하였다.

한편 決定文(Decision) 작성을 위한 3개의 基礎委員會(Drafting Group)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77그룹 대표와 긴밀한 협조하에 결정문 초안 작성단계에서부터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황사, 산성우 등 東北亞地域 環境問題의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국가간에 공동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III. 向後 對策方向

우리나라는 「議題 21」의 세계적인 實踐計劃 마련을 위한 직접적

「의제 21」의 구성

| 전문 | 내용 |
|-------------------|--|
| I. 사회·경제부분 | 1. 전문 2.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련 국내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3. 빈곤퇴치 4. 소비패턴의 전환 5. 인구동태와 지속가능성 6. 인간보건증진 7.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8. 의사결정에 있어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 |
| II. 자원의 보전·관리 | 9. 대기보전 10. 토지자원의 기회·관리 11. 산림황폐방지 12. 사막화 13. 지속가능한 산지개발 14. 농업 및 농촌 15. 생물다양성 보전 16. 생명공학의 환경안전관리 17.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 18. 담수자원 19. 유해화학물질 20. 유해폐기물의 불법교역방지와 환경안전관리 21. 고형 및 하수폐기물 22. 방사능 폐기물 |
| III. 주요 그룹의 역할 강화 | 23. 전문 24. 여성 25. 청소년 26. 원주민 27. 민간단체(NGO) 28. 지방정부 29. 노동조합 30. 상공계 31. 과학계 32. 동민 |
| IV. 이행수단 | 33. 재원 및 재정체계 34. 기술이전 35.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 36. 교육, 홍보 및 훈련 37. 능력형성을 위한 국내 체제와 국제협력 38. 국제제도장치 39. 국제법적 자치 및 체제 40.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

참여(기술이전 및 소비패턴에 관한 CSD 워샵개최등)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기여함과 동시에 公的開發援助(ODA), 地球環境金총(GEF) 출연확대등 개도국의 「의제 21」 이행 노력에 지원하므로서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참여와 기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議題 21」은 영역이 광범위하므로 관련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NGO 등 민간부문의 전문가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제4차 CSD會議에 준비단계에서부터 의제관련 NGO의 참여및 지원방안 검토하고 국내 NGO와 국제 NGO간의 連帶活動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므로서 「의제 21」 이행을 위한 산·학·연, 민간단체, 정부의 연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